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위기극복자금' 주요 Q&A

Q1.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1. 12. 18이후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체 및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장) 대전지역 내 사업자등록 후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
-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영업여부) '21. 12. 18.~' 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증상 폐업했다라도 지원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Q2. 금지, 영업(시간)제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해 당 업 종
금지에 준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 콜라텍 • 무도장 • 노래(동전)연습장 • 여행업
영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오락실(홀덤펍게임장)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DVD방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안마소
매출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 • 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p>※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제외(단,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p>

Q3. 지원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1.12.18 이후 영업(시간)제한·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Q4. 폐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특별방역대책기간인 ' 21. 12. 18.~'22. 2. 20. 기간 중 폐업자도 지원가능

Q5. 폐업자의 경우도 매출감소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 폐업자의 경우에도 영업 중인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매출감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출감소 여부 판단 후 지원됩니다.

Q6. 공동대표인 경우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은 1개의 사업체에 1회 지원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 대표자가 여러 명인 사업체의 경우 1인 선택 후 신청 바랍니다.

Q7.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 시, 어떻게 지원되나요?

-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일반업종에 해당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8. 1개의 사업체에서 여러 종목을 운영 시 각각 지원이 되나요?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으로 주된 업종으로 지원됩니다.

Q9. 21. 12. 18. 이후 대표자 변경 시 어느 대표에게 지원되나요?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하고 있어 신청기준 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지원대상 입니다.

Q10.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나요?

- 소기업 ·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에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연매출 10~120억원 이하(붙임자료3 참조)

Q11.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연매출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제출하신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구간 평균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Q12.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대전시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일반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정부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Q13.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의 방역지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확인 후 해당 분류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해드립니다.

Q14.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에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 영업 시간·인원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Q15. 월 평균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및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 건가요?

- '21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익월 월매출부터 적용 평균 매출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붙임2’ 참고

Q16. 매출 증명서류는 세무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증빙자료는 모두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Q17. 지원금 지급 신청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차, 금지업종 대상자는 3. 10. ~ 5. 13. 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 2차, 영업제한업종 대상자는 3. 15. ~ 5. 13. 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 3차,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4. 1. ~ 5. 13. 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Q18. 간편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및 정부지원금* 旣 지급업체가 대상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21.3월), 희망회복자금('21. 8월), 1차 방역지원금('21. 12월)

Q19. 간편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류는?

- 간편지급 신청서류는
 -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또는 법인) 통장사본입니다.

Q20. 간편지급 대상자는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간편지급 신청자의 경우 아래 순서로 지원대상을 확인합니다.
 - ① (1차) 대상여부조회- 정보제공동의 및 사업자번호 입력
 - ② (2차) 본인인증- 휴대폰인증
 - ③ (3차) 추가정보 확인·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④ (4차) 지급- 신청결과 및 지급문자 알림

Q21. 확인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확인지급 대상자는 간편 지급에 누락되신 분이 대상입니다.
 - ✓ 간편지급으로 지급받은 대상 사업체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22. 확인지급 대상자는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확인지급 신청자의 경우 아래 순서로 지원대상을 확인합니다.
 - ① (1차) 온라인·방문신청- 지원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② (2차) 증빙서류검토-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일반업종 검토
 - ③ (3차) 지급여부결정- 대전시·일자리경제진흥원
 - ④ (4차) 지급- 신청결과 및 지급문자 알림 / 10일 이내

Q23.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류는?

○ 확인지급 신청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또는 법인) 통장사본입니다.

✓ 아래 업종은 해당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점·음식관련) 영업신고증
- (목욕장업) 영업신고증
- (평생교육직업학원)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 (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 (공연장) 공연장 등록증

* 마사지 등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으로 시설확인이 어려운 경우,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대체 확인

Q24. 간편·확인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방문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sos.djbea.or.kr 접속

[방문 신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Q25.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Q26. 간편·확인지급은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인터넷 앱을 이용하여 접수페이지(sos.djbea.or.kr)로 접속하신 후 신청바랍니다.

Q27. 신청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Q28. 온라인 접수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업주의 경우 방문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 온라인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29.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 다만, 대리인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이 진행되며 사업장 및 사업주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바랍니다.
- ✓ 대리인이 신청시 사업관련 안내문자는 대리인에게 발송됩니다.

Q30. 대리인 신청 후 대리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통장은 대리인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31.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완료 페이지에 접수번호가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 접수페이지의 ‘신청현황’ 으로 들어가면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로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대표자와 예금주(또는 법인사업자)는 동일 명의여야 합니다.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개명시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33. 지원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접수 페이지(sos.djbea.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기간은 2022. 4. 1. ~ 2022. 5. 27.까지입니다.

Q34. 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출하신 소명자료를 통해 지원여부 재검토가 진행됩니다.

Q35.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중복 수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급액 전부 환수 조치합니다.

Q36. 민원상담 번호는 몇 번인가요?

- 일상회복자금 상담 전화번호는 042-380-7979입니다.
- ✓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점심시간 12시~13시)

〈업종관련 질문〉

Q1. 식당카페는 어떤업종이 해당되나요

- 영업신고증상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이 해당되며,
- 홀덤펍, 편의도 식당·카페 시설유형으로 분류됨.

Q2. 무인카페를 운영 중인데 식당카페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인카페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또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통해 영업(시간)제한 확인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업종으로 지원됩니다.

Q4. 목욕장업은 어떤업종이 해당되나요

-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Q5. 실내체육시설에는 어떤업종이 해당되나요?

- 탁구, 배드민턴,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 체조장, 체육도장(무술류),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GX류 운동,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등이 해당됩니다.
- ✓ 축구, 야구, 실외풋살, 실외농구 등 실외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목욕장 시설내 입점해 있는 매점입니다. 목욕장업 시간제한으로 매점도 똑같이 제한을 받았습니까.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시설 내 입점되어 있을시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방역지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추가제출)

Q7. 멀티방은 무엇인가요?

- 노래방, 비디오방, 피시방 등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오락공간입니다.

Q8. 학원(교습소)의 경우 영업시간제한에 해당이 되나요?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 조치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업종으로 분류 매출감소가 있어야지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Q9. 식당·카페에 편의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만 가능한가요?

- 모든 편의점이 해당됩니다.
-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의 종류 무관하며 자유업 포함으로 모든 편의점이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금지 조치됨.

Q9. 마사지·안마소의 경우 어떤 시설이 해당이 되나요?

- 자유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업종·업태 구분이 ‘마사지·안마’로 표기 되어 있거나,
- 방역지원금 관련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제출로 같음 합니다.

Q10. 일반업종 중, 부동산 중개업은 신청가능 한가요?

- 부동산 중개업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사업장은 신청가능합니다.
 - ✓ 단, 부동산업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붙임 1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2

매출감소 판단기준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연매출반기별 비교 선택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월매출 비교 선택시) 국세청(홈택스)로 확인된 매출내역 ①~③ 제출
 - ① 신용카드매출자료 ② 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 (일반업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2019년 이후 1개 구간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

개업시기 (사업자 등록증기준)	매출액 감소 비교 구간(기준/비교)								
	'19.연 '20.연 '21.연	'19.상/ '20.상·하	'19.상/ '21.상·하	'19.하/ '20상·하	'19.하/ '21.상·하	'20.상/ '20.하	'20.상/ '21.상·하	'20.하/ '21.상·하	'21.상/ '21.하
18년 이전	○	○	○	○	○	○	○	○	○
19년 상반기	○	○	○	○	○	○	○	○	○
19년 하반기	-	-	-	○	○	○	○	○	○
20년 상반기	-	-	-	-	-	○	○	○	○
20년 하반기	-	-	-	-	-	-	-	○	○
21년 이후	-	-	-	-	-	-	-	-	○

<개업시기별 월 평균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개업 월별 매출감소 상세기준은 별도 작성 참고

개업시기	매출액 감소		연매출
	기준	비교	
21년1월~6월	21년 2월~9월	21년 7월~22년 2월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구간 연매출 환산
21년7월~12월	21년 8월~22년 1월	21년 12월~22년 2월	
22년1월~2월	22년 2월~3월	22년 3월~4월	

□ (개업시기별 월 평균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월	매출액		
	기준기간 ①	비교기간 ②	비교기간 ③
2021년 1월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21. 2월~'21. 6월	'21. 7월~'21. 10월	'21. 11월~'22. 2월
2021년 2월	'21. 3월~'21. 6월	'21. 7월~'21. 10월	'21. 11월~'22. 2월
2021년 3월	'21. 4월~'21. 7월	'21. 8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4월	'21. 5월~'21. 7월	'21. 8월~'21.11월	'21.12월~'21.2월
2021년 5월	'21. 6월~'21. 8월	'21. 9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6월	'21. 7월~'21. 9월	'21.10월~'21.12월	'22. 1월~'22. 2월
2021년 7월	'21. 8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8월	'21. 9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9월	'21. 10월~'21. 11월	'21. 12월~'22. 2월	
2021년 10월	'21. 11월~'21. 12월	'22. 1월~'22. 2월	
2021년 11월	'21. 12월	'22. 1월~'22. 2월	
2021년 12월	'22. 1월	'22. 2월	
2022년 1월	'22. 2월	'22. 3월	
'22년2월20일 이전	'22. 3월	'22년 4월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익월 매출액부터 적용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구간이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기준기간 ① 평균매출액 대비, 비교기간 ② 또는 ③의 매출액 감소(택1)

*** 정부지원금*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감소로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여 간편지급 대상으로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21. 3월), 희망회복자금(' 21. 8월), 1차 방역지원금(' 21. 12월)

붙임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1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